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의무 신설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45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제출하는 의무 부과	3
2. 사업주가 제출한 결과 조치사항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점검 및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명령 근거 마련	6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3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

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6조 및 제175조).

Ⅲ. 검토의견

1.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무 부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36조제3항 및 제175조제6항 제2호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② (생략)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175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제175조(과태료) ⑥ ----- ----- ----- -.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u>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자료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사업주 자율로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일정 부분 강제적인 절차가 도입되어 위험성평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실적인 운용 측면에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사업주는 사업의 성립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매년 적정성을 재검토(정기평가)하고, 위험요인이 추가되는 경우 수시로 위험성평가(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거나, 매월 위험성평가, 매주 책임·관리자 등의 이행상황 점검,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등¹⁾ 그 횟수가 연간 수십·수백회 이상 이를 수도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있어 매번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은 사업주와 지방 고용노동관서 모두에게 너무 과중하여 현실적으로 그 이행이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

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

- 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의 78.4%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 전담 인력 및 제도 이해 부족, 시간 및 금전 부담 등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함

(규모별 실시율) 5인 미만: 32% / 5~49인: 70.1% / 50~99인: 91% / 100인~: 95.6%

(50인 미만 미실시 사유) ①인력부족(53.2%), ②제도 이해의 어려움(45.7%), ③시간·금전 부담(41.5%), ④낮은 근로자 참여(19.1%) 순

2. 사업주가 제출한 결과 조치사항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점검 및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명령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매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검토 및 보완 조치 명령과 사업주의 조치명령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조치명령 이행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4항부터 7항까지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③ (생략) <u><신설></u>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③ (생략) <u>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의 보완에</u>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3. ~ 8.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
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조치명령,
이행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2의2.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
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 8.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재도 산업안전 감독·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실시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지도하고 있고, 모든 사업장의 결과를 제출받고 감독관이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 진행 후 개선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다시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투입 등 비효율이 상당하며, 현재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이 701명(수사인력 제외)인 상황에서 약 300만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점검 시 감독관 1인당 연간 점검 사업장은 약 4,210개소에 달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5

참고 1

위험성 평가의 절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 실시규정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함.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 다음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고나한 정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등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사업주는 업종·규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구조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따른 위험성의 추정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그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함.

○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④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함.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
 -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⑥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록·보존할 사항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3.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6.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 :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